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발의자: 배지훈의원 외 7명
- 발의일자: 2021. 11. 25.
- 회부일자: 2021. 12. 3.
- 검토기간: 2021. 12. 3. ~ 12. 9.(7일간)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제정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제8조)
-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 개정)」이 전부개정 되어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으로 독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 ~ 제4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에 대해서, 안 제5조 ~ 제8조에서는 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 안 제9조 ~ 제15조에서는 조기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규정 하였음.
-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